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568-01

변리사 시험 제2차 실무형 문제 출제 가이드라인 개발

2017. 11.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기간 : 2017년 8월 4일 ~ 2017년 11월 1일

○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연구원 :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자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요약문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국경을 넘나들며, 각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업과 특허법인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현재의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여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변리사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특허법,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실제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의 작성 및 보정 등 실제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 하고 있는 바, 이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고, 또한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 및 답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형 문제 및 접근방향, 그 밖에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격요건, 채점방식, 출제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준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변리사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과 현직 변리사 등의 설문 의견을 포함하여,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등에서 본 연구 결과물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emphasiz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Thus, the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appreciated an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In particu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rossing national boundaries and are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that directly affects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e role of a patent lawyer specializing in industrial property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such, the demand for the patent lawyers with practical skills, including an ability to respond to disputes, is increasing rapidly, as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e being intensified. Especially, the need for patent attorneys who are practical in business and patent corporations has been constantly raised. This study thus tried to search for an approach to select the patent lawyers with excellent practical skills.

This study is also aimed to present the practical questions on the patent law and the trademark law for the 2nd exams and to help to conduct the research on the solutions and real problem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ere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Kingdom, etc, have selected the patent lawyers who have excellent practical skills by presenting the questions of the tasks that patent lawyers perform, such as the preparation and correction of patent specifications. Therefore, Korea is also trying to create these practical questions and to present the examples and answers to guide the student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exams for the patent lawyers to operate stably by presenting the preparations on details, including the overall operation and qualifications of the exams, scoring methods, questions presenting methods, etc. This study was thus conducted to present the survey opinions on various improvement plans and from current patent lawyers so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in the exams system that will change in the future.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2장 변리사 시험제도 일반	3
제1절 우리나라의 변리사 시험제도	3
제2절 국외의 변리사 시험제도	5
I. 일본	5
II. 미국	6
III. 중국	8
IV. EQE(유럽통합변리사 시험)	9
제3절 결론	10
제3장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관련 논의 ...	11
제1절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관련 논의	11
I. 실무형 문제의 출제 필요성	11
II.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및 운영관련 쟁점	12
1. 문제유형	12
2. 시험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17
제2절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22

제4장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예시	62
제1절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배경	26
제2절 특허법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27
I. 유형 1 : 명세서, 청구항의 작성 문제	27
1. 문제	27
2. 문제의 접근 요령	40
3. 예시답안	41
II. 유형 2 :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문제	42
1. 문제	42
2. 문제의 접근 요령	55
3. 예시답안	56
III. 유형 3 :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	59
1. 문제	59
2. 문제의 접근 요령	72
3. 예시답안	73
IV. 유형 4: 소장의 작성 문제	76
1. 문제	76
2. 문제의 접근 요령	92
3. 예시답안	93
제3절 상표법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	96
I. 유형 1 : 의견서 작성 문제	96
1. 문제	96
2. 문제의 접근 요령	101
3. 예시답안	102

II. 유형 2 : 이의신청서의 작성 문제	105
1. 문제	105
2. 문제의 접근 요령	109
3. 예시답안	110
III. 유형 3 : 심판청구서의 작성 문제	114
1. 문제	114
2. 문제의 접근 요령	118
3. 예시답안	119
IV. 유형 4 : 소장의 작성 문제	123
1. 문제	123
2. 문제의 접근 요령	128
3. 예시답안	129
제5장 결론	1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특허분쟁이 나날이 급증하는 등 지재권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2008년 이후 급증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재권의 관리는 이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재권 관리 및 효율적인 분쟁대응 등, 실무능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변리사 채용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변리사의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등록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나, 지재권에 대한 실무적 역량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변리사가 대거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의 대한 역량 없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무체재산권이 출현하고 국제적 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변리사의 업무는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제적 유통까지 관련되고 있으며, 업무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변리사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은 물론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등 인접 분야의 지식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¹⁾ 이처럼 변리사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리사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변리사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재권에 대한 역량을 갖춘 변리사를 양성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라 할 것

1) 전광출, 변리사의 자주성 측면에서 본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지식과 권리」 제16호, 대한변리사회, 2013, 31면.

이며, 현행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우리나라의 변리사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시험시행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자 변리사 시험 2차 과목을 1980년대 공업소유권과 선택과목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현행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축소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환경상 많은 경우 대학의 입학과 함께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기술에 관한 전공 지식이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고득점에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 실제 변리사 실무에 있어서 활용되는 전공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예시문제, 답안 등을 제시하고, 실제 예시문제를 수험생 등을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변리사 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의 시험과목에 출제할 실무형 문제의 유형을 확정하여 체계화 한다. 또한 확정된 문제 유형 각각에 대하여 실제의 사례 및 판례,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예시문제를 개발하도록 한다. 개발된 예시문제는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여 예시문제를 검증하며, 수험생의 사전준비를 위한 예시답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형 문제가 제2차 시험에 원만히 적용될 수 있도록 출제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실무형 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예시문제 및 답안의 제시와 함께,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사례 및 현직 변리사 등의 자문을 얻어, 실무형 문제의 운영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2장 변리사 시험제도 일반

제1절 우리나라의 변리사 시험제도

변리사법은 1961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변리사의 업무²⁾, 자격³⁾, 시험⁴⁾, 등록⁵⁾, 징계⁶⁾ 및 변리사회의 조직을 구성⁷⁾함으로써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의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⁸⁾만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⁹⁾ 그 밖의 어떠한 자격도 요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은 제외한 다른나라들이 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이공계 또는 지식재산관련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2) 변리사법 제2조(업무)

3) 변리사법 제3조(자격)

4) 변리사법 제4조의2(변리사시험),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 변리사법 제5조(등록), 제5조의2(등록거부), 제5조의3(등록취소)

6) 변리사법 제17조(징계)

7) 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8)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또한 이러한 결격사유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 및 전문자격시험에서의 결격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 일형으로 과목별로 40문항씩 출제된다. 응시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로 4과목이며,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및 관련조약의 내용이 포함되며 시험시간은 70분이다. 민법개론의 경우 친족·상속편은 제외되며 70분간 치러지며 자연과학개론은 60분 동안 치러진다. 영어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¹⁰⁾으로 대체된다.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의 총 4과목이며, 과목별로 4문항씩 120분간 치러진다. 선택과목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중 1개를 선택하며 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및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일부 시험이 면제가 된다. 직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2차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2차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¹¹⁾

1, 2차 시험을 합격하면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게 되나,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의무연수와 1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¹²⁾ 또한 업무 중인 변

10) 영어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기준을 아래와 같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준]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11) 특허청 5급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제2차 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 1과목 씩 총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12)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사라 할지라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보수 연수교육을 2년의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¹³⁾

제2절 국외의 변리사 시험제도

I. 일본

일본의 변리사 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변리사는 특허·디자인·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절차에 관한 대리, 재판외의 분쟁해결 절차로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재사건 절차에 대한 대리, 특허나 저작물에 관한 권리·기술상의 비밀의 매매계약, 라이선스 등의 계약 교섭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 특허청에서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서 심판 또는 심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일본 역시 변리사 시험의 응시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시험은 총 3차로 이루어지며 객관식, 논술식, 구술(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있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되며 3시간 30분간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특허·실용신안법 20문항, 디자인법 20문항, 상표법 10문항,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 10문항,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10문항이다.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 종합점수 65% 이상을 이상의 점수를 기준으로 논술형과 구술시험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인정점수를 공업소유권심의회가 정할 수 있다. 또한 종합점수가 65%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차 시험의 경우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의 지식을 평가하는 필수과목과 기술 및 기타 법령의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과목은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선택 1과목이며 선택 과목으로는 공학 I (기계·응용역학-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토질공학), 공학 II (수학·물리-기초물리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공학 III (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공학 IV (생물-생물학 일반, 생화학), 공학 V (정보-정보이론, 컴퓨터공학), 법률(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민법) 중 1개를 택하면 된다. 2차 시험의 배점비

13)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율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00점, 의장, 상표, 선택과목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각각 평가하며, 필수과목의 경우 각 과목의 표준편차에 의한 시험 점수를 조정한 후 각 과목 점수의 평균이 54점을 상회하여야 하며, 각 과목이 최저점수는 최소한 47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선택과목의 경우 60점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2차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인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구술시험의 경우 특허·실용신안, 상표법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채점 기준은 A, B, C의 영역방식으로 C 등급이 2개 이하이면 합격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1, 2, 3차 시험이 면제된다.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차 시험 합격 발표일부터 2년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¹⁴⁾ 2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합격한 자는 합격 발표일부터 2년간 필수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되며, 선택과목의 경우 시험 합격 발표일부터 영구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학교교육법」 제104조에 규정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중 학위수여에 관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선택 과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위가 있는 자 중에서 전문직대학원에서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수료요건인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변리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적자격을 가진 자¹⁵⁾는 2차 시험의 선택 과목이 면제된다.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 1, 2, 3차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시간의 연수와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일본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를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II. 미국

미국의 경우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변리사의 업무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특허변호사라 할 것이다.¹⁶⁾ 특허대리인 시험에 관해서는 미국특허청 규칙(Consolidated Patent Rules,

14) 단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시험은 시행하며, 시험시간은 35분으로 한다.

15) 기술사, 1급 건축사, 제1종 전기주임기술자, 제2종 전기주임기술자, 약제사, 정보처리사,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사법시험합격자, 법무사, 행정서사.

16) 다만 미국의 경우 일반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특허업무를 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특허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외에 별도로 특허대리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의 특허변호사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 특허청, 「변리사

CPR §11.7)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i) 학부전공이 이공계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훈련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ii)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iii) 특허청 내 등록징계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 OED)에서 주관하는 등록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이 중 직접적인 변리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요건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i) 이공계 학사학위가 있는 자 (카테고리 A)¹⁷⁾, ii) 이공계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카테고리 B)¹⁸⁾, 또는 iii) 과학, 공학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공학기본 시험(Fundamentals of Engineering, FE)에 통과한 자(카테고리 C)로 상기의 3가지 요건 중 1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OED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와 관련한 등록시험을 보게되며, 이 시험은 특허 실무에 관한 법률, 규칙,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¹⁹⁾ 시험은 특허청과 ETS 산하의 시험개발 및 서비스 운영업체인 프로메트릭(Prometric)을 통해서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100문제가²⁰⁾ 오전, 오후 섹션으로 나누어져 5총 6시간동안 진행되며 70%(63문항)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한다.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3, 16면.

17)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공계란, 생물학, 약리학, 전기화학공학, 생물화학, 물리학, 공학물리학, 식물학, 섬유기술, 일반공학, 컴퓨터과학, 항공공학, 지질공학, 전자기술, 농업공학, 산업공학, 식품기술, 생물의학공학, 기계공학, 일반화학, 세라믹공학, 금속공학, 해양공학, 화학공학, 광업공학, 미생물학, 토목공학, 원자력공학, 분자생물학, 컴퓨터공학, 석유공학, 유기화학, 전자공학이 해당된다.

18) 상세전공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사전자격요건 중 이공계 이수학점 상세]

옵션1	물리학 24학점
옵션2	화학·물리학 8학점 + 생물학·식물학·미생물학·분자생물학 24학점
옵션3	화학 30학점
옵션4	화학·물리학 8학점 + 화학·물리학·생물학·식물학·미생물학·분자생물학·공학 32학점 (설계공학, 기계제도 4학점 인정)

19) 시험은 별도의 과목의 구분이 없으며 당해시험에서 인용될 수 있는 특허문헌에 대한 정보를 시험 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인용될 특허자료는 다음과 같다.

1.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Edition 9
2. Consolidated Patent Laws Including Changes Implementing the Patent Law Treaty
3. Consolidated Patent Rules Including Changes to Implement the Patent Law Treaty
4. Inter Partes, Post Grant, and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Final Rules (77 Fed. Reg. 48680, August 14, 2012)
5. Derivation Proceeding Final Rules (77 Fed. Reg.56068, September 11, 2012)
6. Changes to Representation of Others Before the USPTO Final Rules
7.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and 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s with Participating Offices

20) 출제는 100개의 문항이나, 이 중 10개 문제는 베타테스트용 문제이므로 실제 특허와 관련이 있는 문제는 9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은 특허법(35U.S.C), 특허·상표·저작권 특허법 규칙(37 CFR), 특허심사절차 매뉴얼(MPEP)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 객관식 시험 이외의 주관식, 실무형 문제, 구술시험 등은 없으며 등록시험 합격 후 특허변호사 및 특허대리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바로 특허변리사로 미국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특허변호사 등록 이후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보수(계속)연수는 없으나, 각 주별로 변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추가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CLE)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중국

중국의 경우 특허변리사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변리사의 응시자격은 i)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ii) 과학 또는 공학에 관련된 전공의 대학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지며,²¹⁾ iii) 특허법 및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며, iv) 2년 이상 과학기술업무 또는 법률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전공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과학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험은 2일에 걸쳐 진행되며 특허 법률지식과 관련 법률지식에 관한 객관식 시험과 특허 대리실무의 주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차에 모두 진행되는 객관식 시험은 특허 법률지식과 관련 법률지식 각 10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 법률지식의 경우 150점 만점으로 2시간 30분 동안 치러지며, 특허기초지식, 특허권부여의 실질적 조건, 출원 서류에 대한 요구, 특허출원과정과 절차, 특허출원의 불복심판, 특허권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실시와 보호, 특허문헌 및 특허분류, 관련 특허조약 및 국제협정 및 특허변리조례 및 관계규정에 관한 문제로 구성된다. 관련 법률지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2시간 동안 치러지며, 민법통칙, 계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재의법, 형법, 대외무역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조례, 파리조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일차 주관식 시험인 특허 대리실무의 경우 150점 만점으로 4시간 동안 치러지며, 통상 3문항 내외의 실무형 문제가 주어지게 된다. 보통 특허명세서를 제시하고 여기에 특허명세서의 청구항 작성, 거절이유서에 대한 의

21)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전공자라 함은 국가가 인정한 졸업장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학위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인증에 의해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견서 작성, 무효심판청구서의 작성,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작성과 같은 실무형 문제로 구성된다. 시험에 관련하여서는 당해 연도의 변리사시험개요 또는 변리사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변리사가 되기 위해 자격시험 이외의 별도의 면제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 후 실제 변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실무연수를 이수할 것을 요하고 있다. 또한 등록변리사의 경우 등록 후 5년간 70학점 이상의 보수연수를 이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IV. EQE(유럽통합변리사 시험)

1979년에 시작된 EQE(The 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는 유럽통합변리사자격시험으로 EPO의 규칙에 따른 변리사로서의 필요한 적성과 지식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유럽특허법 및 특허협력조약(PCT), 파리협약 (the Paris Convention)에 따른 유럽특허출원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본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생물학, 생화학, 화학, 전자공학, 약학 등의 과학또는 기술과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유럽통합변리사시험규칙(Regulation on the 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REE) 제11조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응시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지식재산 관련 실무 경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무경험이란 변리사 등과 같은 전문인의 감독 하에 있거나 또는 특허전문 회사 또는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를 의미한다.

본 시험은 1년에 1회 개최되며 시험은 EPO의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1개의 언어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시험은 5과목으로 사전심사 1과목과 의견서 작성 등과 같은 실무형 시험 4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특허청구범위 초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며 4시간동안 실시된다. 지원자들은 사전심사를 통과해야지 이후 의견서 작성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Paper A는 명세서 작성 시험으로 유럽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며 시험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Paper B는 특허청구범위의 보정과 관련 의견서의 제출이다. 선행기술문헌이 인용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시간은 3시간이다. Paper A와 B의 경우 출제분야가 화학과 전기·기계의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Paper C는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하는 것으로 5시간동안 치러진다. 마지막 Paper D는 특허출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질문 및 작성된 답안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5시간 동안 진행된다. 각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평균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할 수 있으며, 일부 점수가 낮은 과목의 경우 다른 과목의 높은 점수를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과락으로 통과될 수 없다. 시험이 후에 추가적인 의무연수나 보수연수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3절 결론

각국 변리사 시험제도는 나라별로 약간씩 상이한 점을 가지며 국가별로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이공계의 전공이나 지식재산 관련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점이다. 국가별로 객관식, 주관식, 실무형, 구술시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격능력을 검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프랑스, 중국, EQE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특허명세서 작성과 같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보다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려 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사전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시험 후에 별도의 연수 또는 수습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변리사 시험의 운영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별 변리사 시험 제도 운영 현황 요약]

국가 \ 내용	자격요건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실무형 시험	구술 시험	연수 /수습	보수 연수
한국	×	○	○	×	×	○	○
일본	×	○	○	×	○	○	○
미국	○	○	○	×	×	×	×
중국	○	○	○	○	×	○	○
EQE	○	○	○	○	×	×	×

제3장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관련 논의

제1절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관련 논의

I. 실무형 문제의 출제 필요성

실무형 문제란 기존의 실체법적인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논술형(사례형) 문제가 아닌 실제로 변리사가 되었을 때 작성하게 되는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리적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출원인 또는 청구인 등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추출하여, 규정된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요소로 한다. 또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보나 상대방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반박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요소로 한다.

기존의 논술형(사례형) 문제의 경우 법적 쟁점의 파악 및 해석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실무형 문제는 기존의 논술형(사례형) 문제에서 요청하는 해결 능력 외에도, 정해진 문서의 서식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적 쟁점을 실제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요소로 한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란 기존의 제2차 시험에서 다루었던 지식 평가에 더불어, 실무에서 변리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험단계에서 실무형 문제의 출제 필요성은 기업과 특허법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요청되어온 바 있다. 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무형 문제의 출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실무형 문제의 경우 수험단계에서 실무의 문서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청구항의 분석이나 간단한 프레임차트의 분석은 수험단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간단한 수준의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실무와 시험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 문제라는 부담이 생겨난다면 변리사 시험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지역적인 논의로는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이러한 오해에 대응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또한 특히 특허법의 경우 기술 분야, 능력, 성향에 따라 청구항의 작성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난이도와 관련하여서도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수험생들이 작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쉽다면 실무형 문제 출제의 실익이 없는 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찾는 것도 난점으로 지적되었다.

II.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및 운영관련 쟁점

1. 문제유형

변리사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새로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실무형 문제의 정의, 영역, 범위, 공부 및 정보획득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시험이니 만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도 사전논의를 실시하여 향후 실무형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실무형 문제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전체의 문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유형을 크게 4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의 경우 실무형 문서에서 가장 중요시 될 수 있는 사항으로 ① 명세서, 청구항의 작성, ② 의견서/보정서의 작성, ③ 심판청구서의 작성, ④ 소장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표법의 경우 ① 의견서/보정서의 작성, ② 이의신청서의 작성, ③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④ 소장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특허명세서의 작성 (특허)

특허명세서의 경우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신이 어떠한 발명을 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발명에 기하여 어떠한 내용의 특허권을 부여받기를 원하는지를 밝힌 문서이다.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청구범위,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설명 및 필요한 도면과 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고, 그 중 특허청구범위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은 정해진 작성양식이 존재하며, 이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양식에 알맞게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특허청구범위 작성 시 기재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등을 판단한다.

나. 의견서, 보정서의 작성 (특허)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보정 등을 통하여 청구항의 삭제나 감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문서가 의견서, 보정서이다.

의견서의 작성의 경우에는 크게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기재불비 및 미완성발명에 대한 의견서 작성, 진보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각각의 의견서의 기본적인 법리와 작성양식이 존재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의 경우 보통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의 요지,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보정내용,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내용을 항목별로 제시하되,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재불비나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는 보정에 있어서 신규사항의 추가가 있을 경우 보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을 정도의 보정과 기재불비에 대하여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재불비의 부분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주지기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작성 등,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올바르게 제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진보성에 대한 의견서의 경우에는 인용기술과 대비하여 목적, 구성, 효과 상의 차이점을 작성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착안할 수 없음을 의견서에 적절히 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심판청구서 작성 (특허)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된 경우, 이미 등록된 특허에 무효의 사유가 있

는 경우, 제3자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의 속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록된 특허에 관하여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특허심판의 종류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시험에서는 각각의 심판유형에 따른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의 작성이 출제될 수 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문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심판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작성양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재사항(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이유)와 특정한 심판에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여부를 판단한다.

[표] 특정 심판청구서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정심판 청구 시 기재사항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기재사항 :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시 기재사항 :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하는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통상실시권 설정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또한 특허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의 이유, 청구의 이유 및 증거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지를 판단한다. 제한적으로 제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나열하고, 각각의 해결방안 중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판단한다.

라. 소장의 작성 (특허)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특허와 관련한 심결취소소송으로는 거절결정불복소송, 등록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소송, 정정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의 작성 및 답변서의 작성이 출제될 수 있다.

소장의 작성 문제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와 유사하게 각각의 소송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기본적인 소장 및 답변서의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장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재사항(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특정한 소송에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특허법원 실무에서 당사자계 사건과 결정계 사건에 관하여 심리범위의 제한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사항을 주장, 입증할 것인가를 취사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주장 가능한 방안을 나열하고, 각각의 해결방안 중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판단한다.

[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의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으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특허심판원이 2004. 4. 1. 2004당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대개, 특허심판절차 경위, 특허발명의 요지, 심결이유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소장에는 그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마. 의견서, 보정서의 작성 (상표)

특허청에 등록된 출원상표가 상표법에 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서를 상표 의견서라고 하며, 특허청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등록에 따른 요구조건이 충족한다는 내용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제출하고자 작성되는 서류이다.

의견서의 경우 특허청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따라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표 출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의견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의 요소로 하다. 예컨대 상표의 경우 거절이유통지의 원인마다 그 작성 내용 및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표의 경우 ‘식별력 없음’,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유사’, ‘지정상품 관련’ 등이 존재한다. 이에 기본적인 작성양식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견에 따른 근거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지, 의견 취지에 따른 적절한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지를 판단한다.

바. 이의신청서의 작성 (상표)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의 출원공고가 있는 후 2개월 내에 누구든지 공고된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유 및 증거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기재된 이의신청서 부분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차 시험에서는 이의신청서의 작성 또는 답변서의 작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제를 출제하며, 적절한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작성양식에 알맞게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요소로 한다. 또한 답변서의 경우, 제시된 이의신청서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여 법적인 항변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사. 심판청구서의 작성 (상표)

상표와 관련한 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으며, 각 시험에서는 각각의 심판유형에 따른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의 작성이 출제될 수 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문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심판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작성양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재사항(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

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이유)와 특정한 심판에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각 심판의 내용에 따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의 이유, 청구의 이유 및 증거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지를 판단한다. 제한적으로 제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나열하고, 각각의 해결방안 중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판단한다.

아. 소장의 작성 (상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와 관련된 심결취소소송으로는 거절결정불복소송, 등록무효소송, 등록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소송, 정정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의 작성 및 답변서의 작성이 출제될 수 있다.

소장의 작성 문제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와 유사하게 각각의 소송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기본적인 소장 및 답변서의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장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재사항(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특정한 소송에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특허법원 실무에서 당사자계 사건과 결정계 사건에 관하여 심리범위의 제한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사항을 주장, 입증할 것인가를 취사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주장 가능한 방안을 나열하고, 각각의 해결방안 중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판단한다.

2. 시험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가. 난이도 및 배점

실무형 문제의 난이도의 경우, 지나치게 어려우면 수험생이 작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쉽게 출제될 경우 실무형 문제의 출제 실익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형 문제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 출제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난이도는 중-중하 정도의 수준에서 실무에서 정형화된 사례로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의견서, 심판청구서 등의 경우 실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하고 있는 바, 시험과 실무의 환경이 상이하며, 수험단계에서 실무를 1회차 정도 다루어보자라는 취지에 따를 때 난이도는 적절한 수준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문제의 배점 역시 기존의 20점과 30점의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각 배점에 알맞은 수준의 쟁점을 포함시키는 문제의 출제가 필요하다. 실무형 문제라 하더라도 작성양식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며, 각 문제별 쟁점을 추출하여 논리구성이 가능한지를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제관련 점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실무형 문제에서 쟁점이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가급적이면 30점의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나.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분량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기존의 제시되던 문제에 비하여 그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 시험시간의 일부 연장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외의 경우 시험을 4~5시간 가량 할애하여 실무형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변리사 시험의 경우 난이도를 중-하 정도로, 배점 역시 기존의 20점 또는 30점 체계를 취한다면 시험시간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120분의 시험에서 20분 정도를 연장한 140분의 운영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난이도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다며, 연장된 시험시간을 실무형 문제에 할애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 할애할 수도 있다는 점의 고려도 필요하다.

다만, 실무형 문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진행 및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입장에서 기존의 4문형 출제가 아닌, 3문형으로 문제를 줄이고 50점의 실무형 문제 1문, 30점의 사례형 문제 1문, 20점의 단답형 문제 1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무형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작성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단답형 문제를 통해서 소쟁점에 대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최근 몇몇 쟁점과 판례만을 공부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기계적으로 쓰기 위한 연습이 수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아예 배제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문제는 실무형 문제를 도입된다고 하여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통적인 부분의 경우 특허와 상표에서 필요한 단문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은 시험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현재 4문항의 출제를 고수해야 하는 지의 부분,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국외사례를 토대로 하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재검토 역시 필요할 수 있다.²²⁾

22) 현재 다른 나라의 실무형 문제의 출제현황 및 운영방침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구분	내용
영국(특허)	출제방법	4유형 : 지식재산법률연습(FD1), 명세서초안 작성(FD2), 명세서 보정(FD3), 특허침해와 대응(FD4)
	시험시간	각 유형별 3시간(명세서 보정의 경우 2시간)
	배점	각 유형별 100점 만점, 5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출제유형	명세서(청구범위 작성)/보정서/심판의견서 작성
영국(상표)	출제방법	3유형 : 상표실무, 고급상표검색, 유럽공동체 상표법/국제상표법
	시험시간	각 유형별 4시간(고급상표검색의 경우 3시간)
	배점	각 유형별 100점 만점, 5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출제유형	-
중국	출제방법	2차 주관식 시험에서 특허대리실무 과목, 3문항 내외의 실무형 문제 출제
	시험시간	4시간
	배점	전체 150점 만점, 각 문제별 개별점수 있음
	출제유형	1개의 발명에 대한 복합적 실무형 문제 출제, 기본 명세서를 제시하고 청구항 작성, 거절이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무효심판청구서의 작성,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특이사항	당해년도 변리사 시험 개요 및 가이드라인 제시
EQE	출제방법	4유형 : 명세서 작성(PaperA), 보정서 작성 및 의견제출(PaperB),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PaperC), 특허출원과

다. 참고자료의 제공

실무형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오랜 시간 다양한 자료(문헌, 판례,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유리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실무형 문서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험의 경우 현실에서와 같이 무한대의 자료제공은 불가능한 바, 어떠한 참고자료를 제시할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가 답을 알려주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서는 안 되나, 적절한 수준의 자료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답안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답안과 변별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적절한 자료제시가 필요하며, 또한 제시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답변의 작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판례의 경우에는 요지만을 제시하게 된다면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측면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수험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판례(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심결례 등)등도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판례의 제시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만약 판례를 제시한다면 판례의 전문을 제시하거나 아면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하다면 판례의 일부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형 문서 자체를 문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인 실무형 문서를 포함시키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제시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라. 답안 작성 요령

실무형 문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어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답안

		관련한 기타 실무형 문제(PaperD)
	시험시간	Paper A, B : 각 3시간, Paper C, D : 각 5시간
	배점	각 유형별 100점 만점, 평균 5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개별과목 40점 미만 과락
	출제유형	명세서 작성/보정서 작성/이의신청서 작성/출원(소송)실무

지의 경우 답변은 평어체로 작성을 하고 있는 바, 어떠한 문체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답안의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평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한다면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기존 사례형 문제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실무형 문제의 경우 실제와 같이 경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단, 평어체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점요소는 되지 않는다,

마. 가이드라인 관련

실무형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사전 인지여부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시문제 및 문제 접근요령, 수험 준비요령 등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변리사시험제도의 일반사항과 변경된 시험제도의 안내부분이 포함되며, 실무형 문제와 관련한 의의, 유형, 평가 요소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형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접근요령의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실무형 문서의 경우, 각 법령 및 법원 등을 토대로 그 문서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허 및 상표의 출원서, 명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정정신청서, 심판청구서 등은 각 법의 시행규칙²³⁾의 별지서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 발간한 「출원서식 표준사례집」²⁴⁾을 통하여 각각의 실무형 문서의 작성요령 및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실무형 문서 중 소장에 대한 작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각 소송의 유형에 따른 소장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소장의 기재요령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작성된 특허명세서, 상표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등의 행정정보의 경우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orea Intellectual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²⁶⁾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전산망에서는 국내

23)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호, 2017. 9. 22. 일부개정) 및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3호, 2016. 9. 1. 전부개정)

24) 특허청, 「출원서식 표준사례집」, 특허청, 2014.

25)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26) KIPRIS (www.kipris.go.kr)

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프리스는 국내 지식재산 정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외의 지식재산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청이 개방중인 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BULK DATA 및 , OPEN API 방식의 정보를 유·무료로 제공하는 특허정보활용서비스 「KIPRIS PLUS」²⁷⁾도 운영하고 있다. KIPRIS PLUS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시정보, 특허·실용신안, 영문초록정보, 이력정보, 검색지원정보, 등록정보, 심판정보, 해외특허, 기계번역정보 및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실무형 문서의 작성요령을 파악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제2절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기업과 특허법인은 실무형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13.9.)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의 경우 변리사의 실무 능력 향상(37%)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및 보정 등 실제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19개에 달하는 변리사 제2차 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개 과목 간 난이도 편차로 선택과목 ‘선택’이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편안이 확정된 바 있으며,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제2차 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다.²⁸⁾

이에 다가오는 2019년 변리사 시험에서부터 제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27) KIPRIS PLUS (plus.kipris.or.kr)

28)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실무에 강한 변리사를 선발한다」, 2014. 6. 30. 보도자료.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실무형 문제란 기존의 실제법적인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관식 사례형 문제가 아닌 실제로 변리사가 되었을 때 작성하게 되는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리적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출원인 또는 청구인 등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추출하여, 제한된 형식으로 제시하고 또한 심사관 또는 상대방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반박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존의 시험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사례형 문제의 경우 쟁점의 논술 및 문제의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형 문제의 해결 능력에 더하여 정해진 문서의 서식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적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란 기존의 제2차 시험에서 다루었던 지식평가에 더불어, 실무에서 변리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표] 변리사 제2차 시험 변경 운영(안)

구분	시험일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과목당 40문항	70분	객관식 5지택일형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70분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60분	
제2차 시험	1일차	특허법(조약포함)	과목당 4문항	140분	논술+실무
		상표법(조약포함)		140분	논술+실무
	2일차	민사소송법		120분	
		선택과목(19과목 중 택 1)		120분	Pass/Fail (50점 기준)

이러한 변경된 시험방식에 따라 운영도 현행과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변경된 변리사 실무형 문제의 출제 시기는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년 변리사 시험에서부터 출제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기존 2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4문항 중 1개의 문항을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실무형 문제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20점 또는 30점으로 구성한다. 또한 실무형 문제의 출제에 따라 시험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표] 실무형 문제 도입에 따른 시험 운영방안

시기	2019년 변리사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과목	변리사 제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 및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 출제
운영방침	기존 2차 시험 4문제 중 1문제를 실무형 문제로 출제 배점은 30점 또는 20점(*문제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수 있음)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확대
문제유형	특허법 : 명세서/청구항의 작성, 보정서/의견서의 작성, 심판청구서의 작성, 소장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 등 상표법 : 의견서/보정서의 작성, 이의신청서의 작성, 심판청구서의 작성, 소장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 등

시험의 채점방식의 경우 실무형 문제의 도입으로 특별히 변경된 바는 없으나, 2017년 11월 1일 시행되는 채점방식으로, 일반응시자의 경우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

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의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4장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예시

제1절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배경

특허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실무 문서로는 크게 ‘특허명세서의 작성’,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심판청구서의 작성’, 그리고 ‘소장’의 작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답변서’나 그 밖에 특허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실무형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출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허법 실무형 문제의 경우, 앞서 제시된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최초의 문제의 초안이 개발된 바 있으며, 수정을 통하여 최종 4안이 결정되었다.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예시문제가 동일한 발명의 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실무형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도, 전공분야에 따라 시험의 결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인 기술분야 내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허법 예시문제의 경우, 각 유형별 예시문제 1안과 예시답안 1안이 제시가 된다. 또한 수험생의 준비를 위하여 접근요령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상표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실무 문서로는 크게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이의신청서의 작성’, ‘심판청구서의 작성’, 그리고 ‘소장’의 작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답변서’나 그 밖에 상표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실무형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출제될 수 있다.

상표법 실무형 문제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예시문제가 기존의 판례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되어 있다. 실제 실무형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판례 등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며, 각 문제의 첨부자료로서 대법원, 특허법원 및 하급심 판례 등이 함께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특정한 판례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시험의 결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판례 및 법리적 쟁점이 포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 예시문제의 경우에도 특허법 예시와 동일하게, 각 유형별 예시문제 1안과 예시답안 1안이 제시되며, 본 보고서에는 접근요령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2절 특허법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I. 유형 1 : 명세서, 청구항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삽”(첨부자료 1)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발명(첨부자료 2)을 완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변리사 乙에게 의뢰하였다.

변리사 乙은 甲의 의뢰를 받은 후 특허출원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첨부자료 3)을 작성하고 있으며, 아직 【과제의 해결 수단】 및 【청구범위】 부분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제시된 첨부자료만을 기준으로 甲이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乙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를 작성하시오. (20점)

첨부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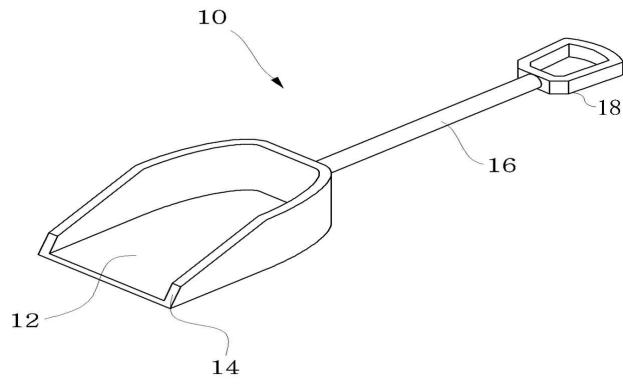
- 첨부자료 1 : 선행기술문헌
- 첨부자료 2 : 甲의 개량발명
- 첨부자료 3 : 명세서 및 도면의 초안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2년05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12345
	(24) 등록일자	2012년05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0-0023456	
(22) 출원일자	2010년08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8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2-0003456	
(43) 공개일자	2012년02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p>【요약】</p> <p>본 발명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10)에 관한 것이다.</p> <p>본 발명에 따른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 등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결합되는 작업부(16)로 구성된다.</p> <p>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p> <p>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p> <p>연소기구로 난방을 하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p>		

【대표도】



(가)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기술사상의 문제점과 발명의 발상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부삽(10)의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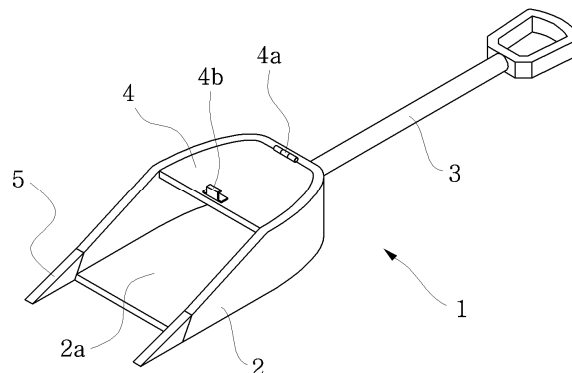
따라서 부삽(10)의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발명의 발상이다.

(나)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부삽(1)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부삽과 달리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통해 부삽(1)의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이 수용공간(2a) 밖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 발명의 도면



(라) 발명의 효과

부삽(1)에, ① 상면막음부(4)만 장착하는 경우, ② 측면막음부(5)만 장착하는 경우, ③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함께 장착하는 경우의 3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함께 장착하는 경우에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효과가 가장 탁월하였고, 측면막음부(5)만 장착하는 경우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명세서】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

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미작성 ===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면막음부 또는 측면막음부에 의해 부삽의 수용공간에 퍼 담 아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 【도 4】 제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실시예 3】

도 4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3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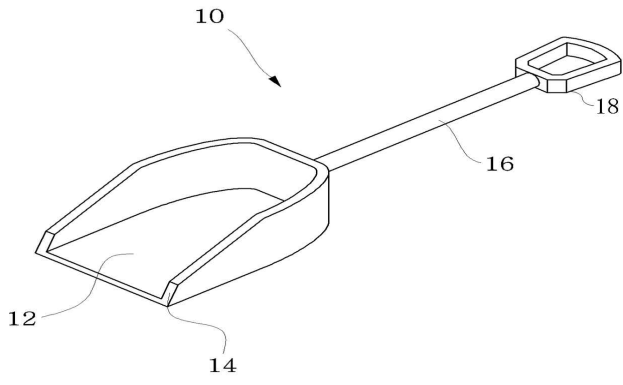
1 : 부삽	2 : 수거부
2a : 수용공간	3 : 작업부
4 : 상면막음부	4a : 힌지축
4b : 손잡이	5 : 측면막음부

【청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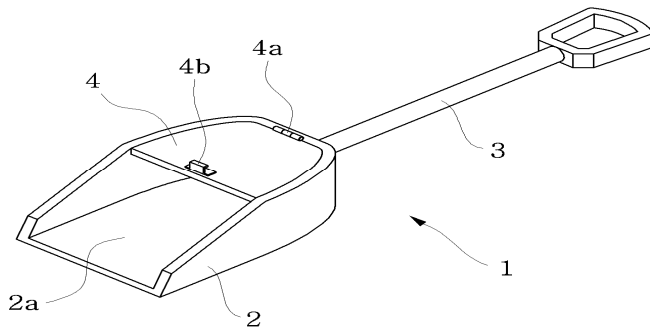
=== 미작성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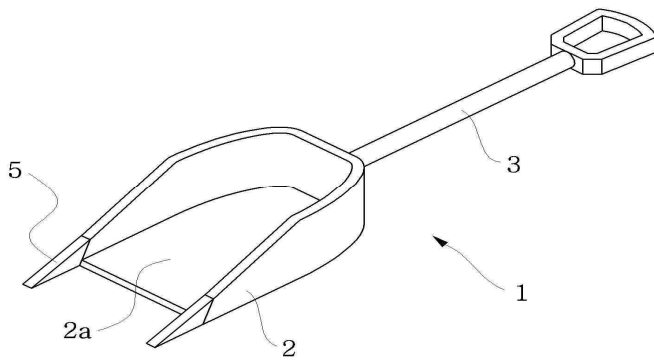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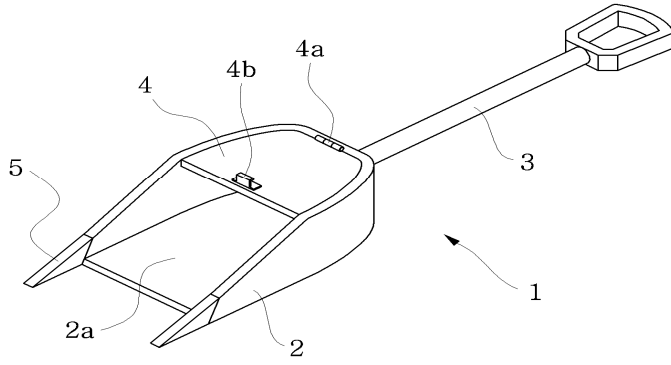
【도 2】



【도 3】



【도 4】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명세서의 경우 변리사 실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발명을 하였으며, 그러한 발명에 기하여 어떠한 내용의 특허권을 부여받기를 원하는지를 밝힌 문서이다. 특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능력은 변리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이러한 형태의 청구범위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42조 및 제45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해서는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법 제29조, 제42조 및 제45조에 위배되는 기재가 있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청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속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체 청구항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출원인의 비용부담이나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등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특허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은 특허출원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
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
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I. 유형 2 :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발명하여 2017년 2월 1일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7-0000077, 첨부자료 1)하였고, 그 후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첨부자료 2)를 받았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 甲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할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첨부자료 2 : 의견제출통지서

첨부자료 3 : 인용발명 1

첨부자료 4 : 인용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의견서의 경우 의견내용만 작성하고,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5. 보정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것
6. 보정서 작성 시 의견서와 보정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명세서】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

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는 내열성이 우수한 (주)한국공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는 내열성이 우수한 (주)한국공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리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청구범위】

【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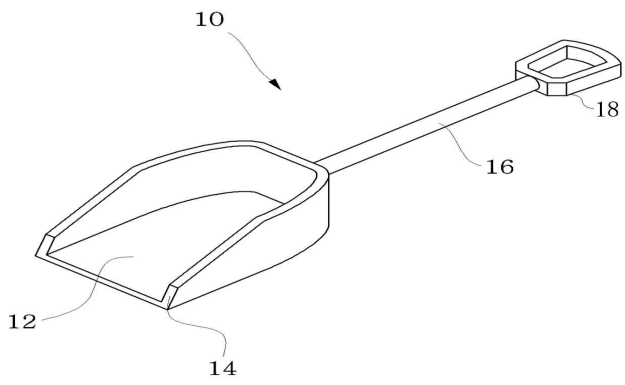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주)한국공업이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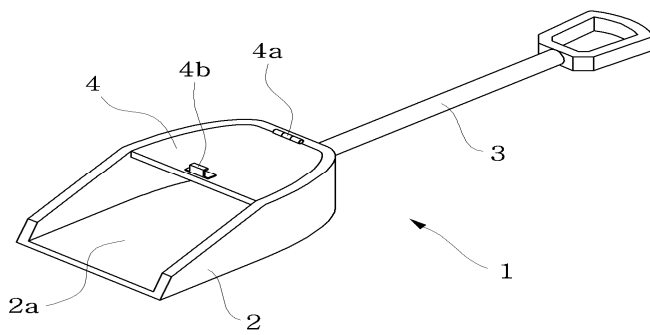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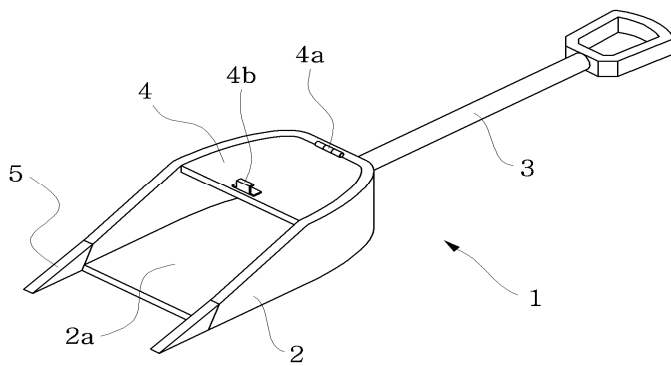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2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자: 2017.12.10.

제출기일: 2018.02.10.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甲
	주 소	000 000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발 명 자	성 명	甲
	주 소	000 000
출 원 번 호	10-2017-0000077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청구항 1 내지 6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1 내지 4	특허법 제29조제2항
2	청구항 5 및 6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1 내지 4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2015.03.10.공고)

* 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2015.01.15.공개)

1-1. 청구항 1과 인용발명1은 모두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서로 동일합니다. 인용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박스(111)에 힌지부(114)로 연결된 커버(11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1과 인용발명 1을 비교해보면,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는 인용발명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각각 동일하고, 다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 1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인용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구성으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1-2.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인용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동일하고,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인 특징은 인용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인 특징과 동일하며,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인용발명 2의 힌지부(114)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를 통해 청구항 2 내지 4를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2.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5 및 6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2-1. 청구항 5에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관계 없는 특정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2. 청구항 6은 청구항 5의 종속항으로 상기 2-1의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6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첨부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2015.03.10.공고) 1부.

첨부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2015.01.15.공개) 1부. 끝.

2017.12.10.

특허청 특허심사1국 주거생활심사과 심사관 ○○○

3

인용발명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5일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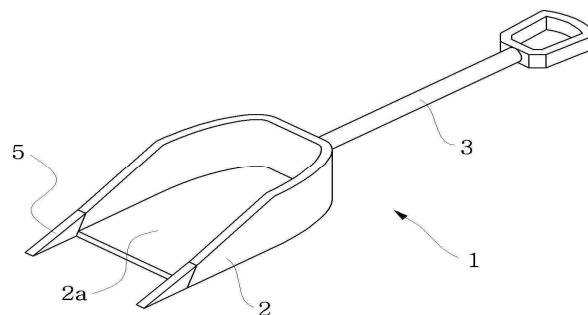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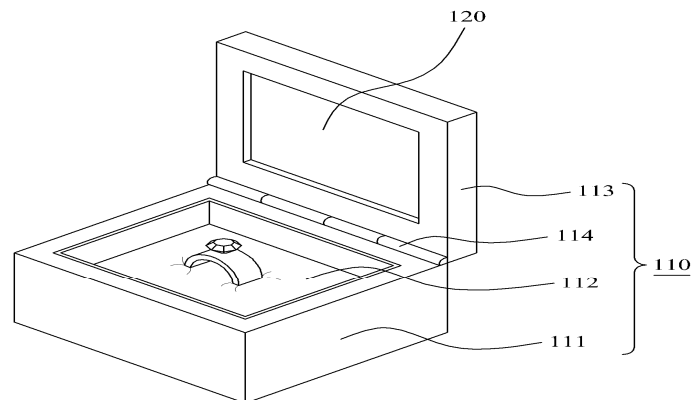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의견서 및 보정서이다.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의견서의 경우 '거절이유의 요지', '보정의 내용', '출원인의 의견'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보정의 내용'에는 기재불비 사항 및 진보성 결여 등과 같은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보정에 관한 내용이 작성된다. '출원인의 의견'에는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출원인의 의견이 작성된다. 예컨대 심사관이 진보성의 결여를 근거로 거절이유를 제시하였다면, 출원인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비교·검토를 통해 진보성이 있다는 의견을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수준의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의견서에서 작성한 보정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 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정의 방향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심사관이 특정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아니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청구항 중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견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은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의견내용】

I. 거절이유의 요지

1. 청구항 1 내지 4 :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해당
2. 청구항 5 및 6 :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

II. 보정의 내용

본 출원인은 청구항 5를 삭제하고 청구항 6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III. 출원인의 의견

1. 거절이유 1(청구항 1 내지 4 :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해당) 관련

청구항 1의 거절이유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인용발명은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항 1은 부삽에 관한 발명이고, 인용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을 방지하여, 불씨나 재 등이 수거부(2)의 상부측 방향으로 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밀폐하는 경우 단순한 덮개 기능을 수행하고, 개방하는 경우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인용발명 2의 커버(113)에 이송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효과나 용도가 없고, 인용발명 2에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발명 2는 청구항 1과 기술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항 1과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가 관련된 인접한 기술분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인용발명 2는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에 사용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또한 심사관님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가 인용발명 2의 커버(113)에 의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하였으나,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박스(111) 상부측 전체를 덮는데 반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만을 덮는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2의 커버(113)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서로 다른 구성이고, 따라서 인용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예측해 낼 수 없습니다.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가 수거부(2)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시예의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수용물의 출입을 위해 반드시 개폐되어야 하지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이송물의 출입을 위해 개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청구항 1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와 같은 구성이 인용발명 2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인용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에 따라 청구항 1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용발명 2에는 이송물이 박스(111) 상부측을 통해 낙하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인용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커버(113)가 개방되는 경우 화상 및 음성이 출력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며, 결코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5)와 같은 구성이 도출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구항 2 내지 4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없습니다.

2. 거절이유 2(청구항 5 및 6 :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 관련

특정 회사명이 기재된 청구항 5를 삭제하고, 청구항 6이 인용하는 항을 청구항 5에

서 청구항 4로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되는 부분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없고, 보정에 의해 청구항 6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되오니, 다시 심사하여 등록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정정)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II. 유형 3 :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

1. 문제

(주)한국공업은 “부삽”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이다. 어느 날, 등록번호 제 10-0000123호(첨부자료 1)의 특허권자 甲(첨부자료 2)이 (주)한국공업에게 “부삽”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甲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주)한국공업은 자사가 판매하는 “부삽”이 甲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삽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 특허권을 무효시키고자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3) 및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4)를 확인하였다.

(주)한국공업은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3) 및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4)를 근거로 청구범위 전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위 사실만을 근거로 무효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오. 단,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만 작성하되,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등록특허공보
- 첨부자료 2 : 특허등록원부
- 첨부자료 3 : 비교대상발명 1
- 첨부자료 4 : 비교대상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주)한국공업이 생산·판매하는 부삽은 甲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
5.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1

등록특허공보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7년02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00123
	(24) 등록일자 2017년02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甲 (72) 발명자 甲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5-0001234	
(22) 출원일자 2015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4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6-0012345	
(43) 공개일자 2016년10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발명의 명칭 :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p>【청구범위】</p> <p>【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 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p> <p>【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p>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어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중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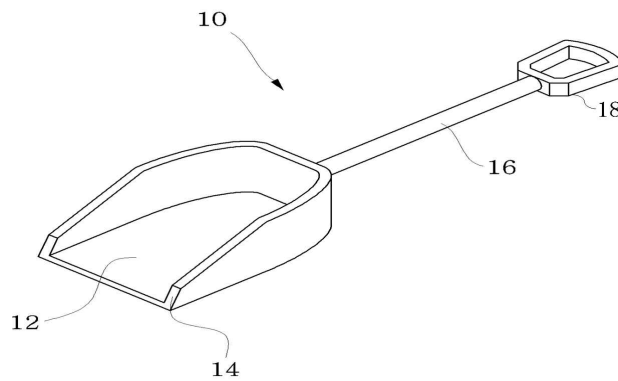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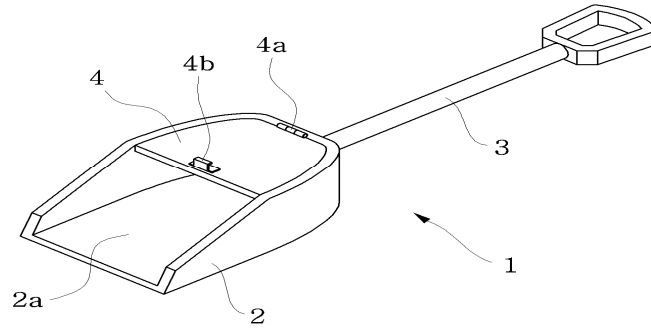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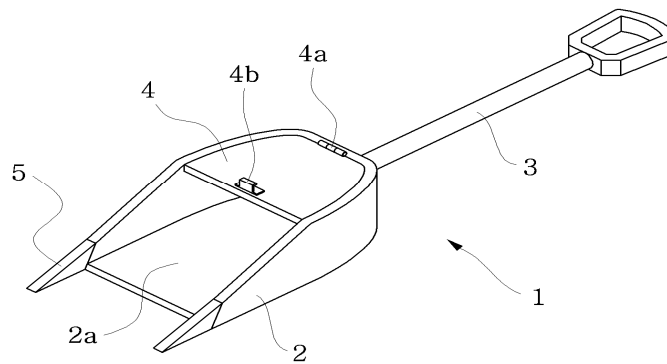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2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000123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5년04월01일
	출원번호	2015-0001234
	공고연월일	2017년02월10일
	특허결정연월일	2017년01월30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A47L 13/52, F24B 15/06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04월01일

[특허료란]

제01-03년분(2017.02.01.~2020.02.01.) 금액 000,000원

2017년02월01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2월01일 등록

이하여백

3

비교대상발명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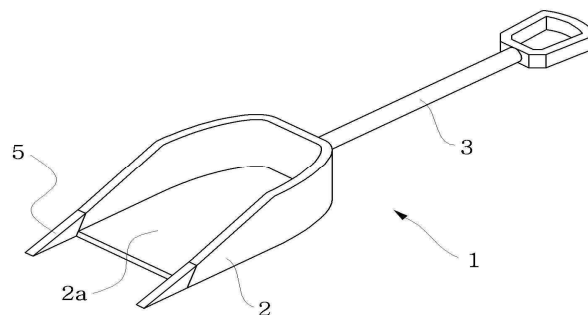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4

비교대상발명 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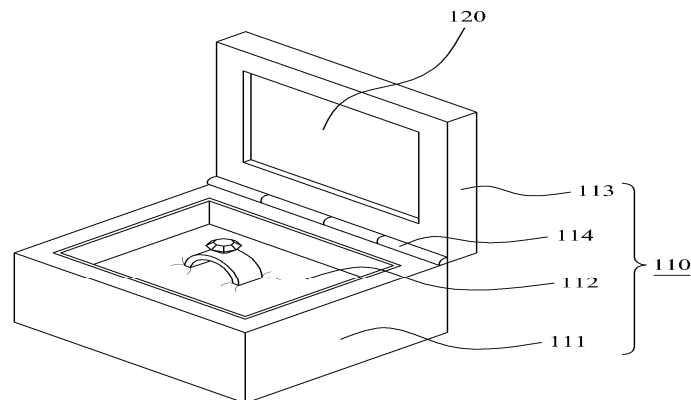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심판청구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거절결정불복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요령을 파악하고 있는지, 각각의 심판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한지, 법적 쟁점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지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심판청구서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가 있다. '청구의 취지'에는 청구인이 구하는 심결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의 이유'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무효심판에 관한 사안이며,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라 청구 범위 전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이해관계인의 소명, 비교대상발명(무효증거)의 특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주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심판청구서)은 심판청구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청구의 취지】

1. 특허 제123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생략)

2. 이해관계의 소명

심판청구인인 (주)한국공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삽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생산 및 판매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 다. 즉, 심판청구인인 (주)한국공업은 당해 특허권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따라서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입 니다.

3. 무효 사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 내지 4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하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 무효 증거

- (1) 비교대상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 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 (5)를 포함하는 부삽에 관한 것입니다.

(2) 비교대상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2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된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박스본체(110)는, 선물을 수납할 수 있는 선물 수납부(112)를 구비하는 박스(111), 그리고 상기 박스(111)에 힌지부(114)를 통하여 개폐가능하게 결합되는 커버(113)로 구성됩니다.

나. 진보성 판단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기술분야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산업분야가 특허발명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로 연결된 커버(113)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러 산업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대비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는 비교대상발명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박스본체(110) 내부 물건의 낙하 또는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힌지부(114)를 통해 어느 곳에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구성이고, 따라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과,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와 각각 동일합니다.

(3) 효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부삽의 상면막음부 또는 측면막음부에 의해 이송물이 수거부 밖으로 이동되는 것이 방지됨으로써,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되어도,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4) 소결

결국 청구항 1 내지 4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목적 및 작용, 효과면에서도 특이성이 있거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결정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V. 유형 4: 소장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은 등록특허공보(첨부자료 1) 및 특허등록원부(첨부자료 2)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의 특허권자이다. 이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가 있었고, 위 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12.12.자로 청구범위 전항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첨부자료 3)을 하였다.

甲은 위 특허권의 청구범위 전항이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4)과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5)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심결에 승복할 수 없어, 특허법 제 186조에 따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실만을 근거로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단,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작성하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등록특허공보
- 첨부자료 2 : 특허등록원부
- 첨부자료 3 : 심결문
- 첨부자료 4 : 비교대상발명 1
- 첨부자료 5 : 비교대상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1

등록특허공보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7년02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00123
	(24) 등록일자 2017년02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甲 (72) 발명자 甲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5-0001234	
(22) 출원일자 2015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4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6-0012345	
(43) 공개일자 2016년10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발명의 명칭 :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범위】	
【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 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리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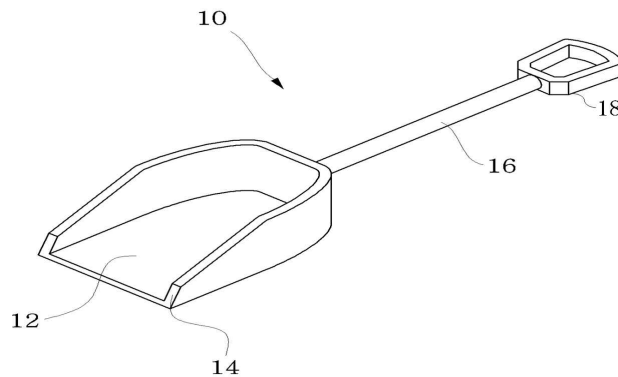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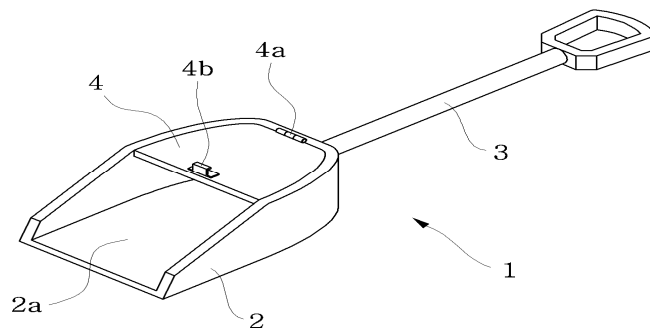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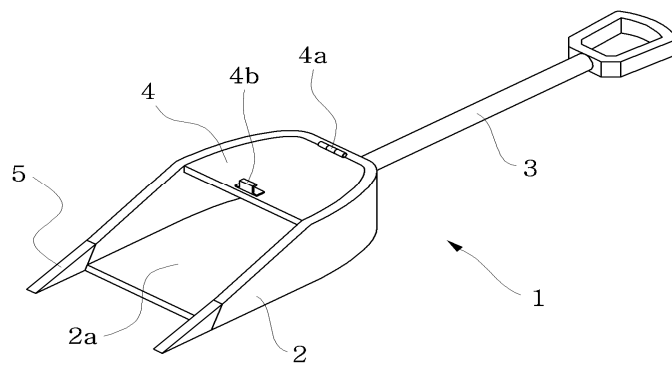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2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000123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5년04월01일
	출원번호	2015-0001234
	공고연월일	2017년02월10일
	특허결정연월일	2017년01월30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A47L 13/52, F24B 15/06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04월01일
2017년02월01일 등록		

[특허료란]

제01-03년분(2017.02.01.~2020.02.01.) 금액 000,000원

2017년02월01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2월01일 등록		

이하여백

특 허 심 판 원
심 결

심판번호 2017당1234

심 결 일 2017.12.12.

주 문

1. 특허 제123호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의 취지

1. 특허 제123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에 기재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은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며, 또한 목적 및 작용, 효과 면에서도 특이성이 있다거나 현저성이 있다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발명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분야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부분인 상면막음부(4)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교대상이 아니며,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는 화상 및 음성 출력은 물론 쌍방향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선물박스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에도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개시하고 있다고 가정함이 타당하며, 그 기술분야도 비교대상발명1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인정된다.

나. 구성 대비

청구항 1의 부삽은 수거부(2), 작업부(3) 및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이와 대비되

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각각 동일한 수거부(2) 및 작업부(3)가 개시되어 있다.

다만,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통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개시 또는 시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과,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와 각각 동일하다.

다. 효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함으로써,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와 대비하여 그 기술분야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의 차이나 결합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 판 장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

4

비교대상발명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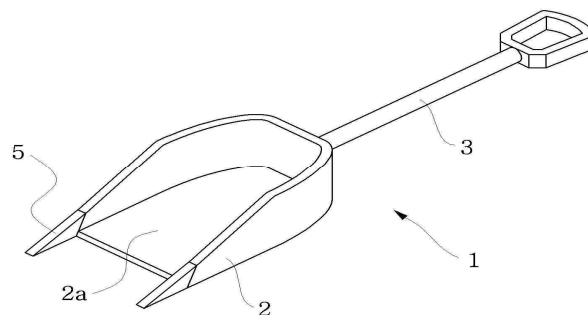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5

비교대상발명 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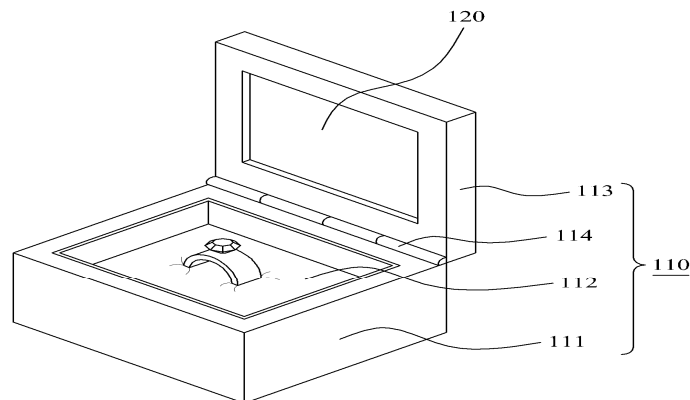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응하여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결취소소송도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장 작성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소장 기재요령을 파악하고 있는지, 각각의 소송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한지, 법적 쟁점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전개되었는지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소장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사건의 개요 및 심결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심결문을 세밀히 분석하여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법리 등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문제의 경우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결합에 이르는 암시나 동기 등이 비교대상발명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합이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심결취소소송의 양식은 소장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7.12.12.자 2017당123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특허 제123호의 특허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2017당1234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생략)

3.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4. 심결 취소사유

가. 기술분야 대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발명은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삽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을 방지하여, 불씨나 재 등이 수거부(2)의 상부측 방향으로 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밀폐하는 경우 단순한 덮개 기능을 수행하고, 개방하는 경우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이송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효과나 용도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가 관련된 인접한 기술분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에 사용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나. 구성 대비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가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박스(111) 상부측 전체를 덮는데 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만을 덮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서로 다른 구성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가 수거부(2)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시예의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수송물의 출입을 위해 반드시 개폐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이송물의 출입을 위해 개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와 같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송물이 박스(111) 상부측을 통해 낙하하

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커버(113)가 개방되는 경우 화상 및 음성이 출력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며, 결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5)와 같은 구성이 도출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효과 대비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 모두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하게 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수거부(2) 상부측 전체가 막히게 되어 부삽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부삽으로 이송물을 이송하는 중 발생하는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각종 오염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의 사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위법한 심결에 해당하고,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상표법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

I. 유형 1 : 의견서 작성 문제

1. 문제

제시된 상표등록출원서(첨부자료 1), 의견제출통지서(첨부자료 2) 및 참고자료(첨부자료 3)를 검토하여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시오(필요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이 가능함). (2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출원서

첨부자료 2 : 의견제출통지서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의견내용만 작성하고,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5. 보정을 하는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1

상표등록출원서

【상품류】

제30류

【지정상품】

차(tea), 인스턴트 차(instant tea), 레몬 차(lemon tea), 차 혼합제품(tea mixture products)

【상표견본】



2

의견제출통지서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출 원 번 호		40-2017-0068657
상 품 류		제30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유 1]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출원상표 “”는 문자 “MaxTea”와 “lemon tea”, 그리고 도형 “음료가 담긴 컵 및 빨대”, “레몬 사진” 및 “기타 색채가 있는 배경부분 등”으로 구성된 표장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MaxTea”는 ‘최고의 차’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해당하고, “lemon tea”는 ‘레몬 차’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성질(원재료 등)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음료가 담긴 컵 및 빨대” 도형은 컵에 담긴 음료가 출렁이는 일반적인 모양에 불과하고, “레몬” 도형은 레몬을 찍은 사물사진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기타 색채가 있는 배경부분 등”은 문자 및 다른 도형의 부수적·보조적인 배경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특별현저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지정상품 : 전부)

[거절이유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이 출원상표는 “lemon tea” 부분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 중 “차(tea), 인스턴트 차 (instant tea), 차 혼합제품(tea mixture products)”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내용이 레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지정상품 : 차(tea), 인스턴트 차(instant tea), 차 혼합제품(tea mixture products)) 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3과

심사관 ○○○

3

참고자료

(1) max 영어사전 검색결과

max는 'maximum'의 약어로서 '수' 또는 '양'과 함께 사용되며, '최대', '최고치'의 의미이다.

(2) 심사 선례

출원상표	지정상품	최종처분
MaxTex	라미네이트직물	등록
Max caffeine	커피	거절

(3) 다수인의 사용 여부

출원인 이외의 제3자가 "Max"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차(tea) 관련 제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타 다수인이 차(tea) 관련 제품에 "Max"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실제사건(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거쳐 등록된 사례)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제이다. 의견서 작성 문제에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각각의 거절이유(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제34조제1항제12호)에 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데, 이때 각 법의 의의, 판단방법, 사안의 적용, 심사선례의 검토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선례의 검토와 관련하여, 유사한 심사선례로 “커피”에 대한 “Max caffeine”은 거절되었으나, “직물”에 대한 “MaxTex”는 등록되었는 바, 이러한 심사선례를 출원인 입장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예시(근거)로 활용하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가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호에 대한 실무상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보정의 적합여부와 관련하여,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보정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의견서 제출 시에 요지변경에 대한 일반론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답안에서 요지변경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3. 예시답안

【의견내용】

I. 거절이유의 요지

1. 지정상품 전부 :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
2. 지정상품 중 차, 인스턴트 차, 차 혼합제품 :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

II. 출원인의 의견

1. 거절이유 1(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 관련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표법은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 표시표장은 통상적으로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 호에서 말하는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할 수 있는 표시를 말하며, 단순히 암시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 판단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귀 청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품질이) 최고의 차’ 등과 같은 의미로 직감되는 표장이 아닙니다. 심사관님께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MaxTea” 부분이 ‘최고의 차’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의 ‘max 영어사전 검색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ax’는 maximum의 약어로서 ‘수’ 또는 ‘양’과 함께 사용되어 (양이) ‘최대’이다 또는 (수치가) ‘최고치’이다의 의미로 사용·인식되는 단어이지, ‘품질이 최고’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Max’는 ‘Min’의 반의어로서 주로 ‘양이 최대이다, 크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최고의 차(best quality tea)’라는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MaxTea” 부분이 ‘최고의 차’의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불과하다는 심사관님의 지적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의미로 직감되는 표장도 아닙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MaxTea” 부분이 ‘(양적으로) 최대의 차’로 인식될 수 있다 하여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양이 최대로 많은 차’ 등으로 상품의 성질을 직감케 하는 성질표시표장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Max는 ‘최대 강우량(the rainfall max.)’이나 ‘최대값(the max. value)’과 같이 양을 나타내는 단어(강우량, 값 등)와 함께 사용되어 양을 한정하는 것이지, 양과 무관한 일반 물건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 명사를 한정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MaxTea”를 굳이 해석하자면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관념이 도출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의 성질 - 양이 최대한으로 많은 등으로 -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말 자체가 어딘가 어법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의 심사선례를 살펴보면, 비록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Max caffeine’은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이는 ‘커피’의 본래적 성질이 원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인 관계로, 커피에 대하여 ‘Max caffeine’이라는 표장은 ‘decaffeinated coffee(디카페인 커피)’와 반대로 줄음 등을 쫓을 수 있게 카페인이 ‘(양적으로) 최대가 포함된’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차’에 대하여 ‘MaxTea’로 구성된 이 사건 표장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직물’에 대한 ‘MaxTex’는 등록이 되었는 바, 이는 주로 양적으로 최대라는 의미의 ‘Max’가 ‘직물’에 사용된다 하여도 ‘최고의 직물’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양적으로) 최대인 직물’ 등의 관념이 도출된다 하여도,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직감케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된 것이며, 이러한 심사선례는 ‘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MaxTea’가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사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MaxTea”는 심사관님의 지적과 같이 ‘품질이 최고인 차’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볼 수 없고, 나아가 양이 많다는 의미로 관념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관념이 지정상품 ‘차’와 관련하여 ‘양이 최대인 차’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직감케 하는 표장이 아닌 하나의 조어상표로 ‘맥스티’와 같이 호칭되고 식별되는 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표법은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

레 및 심사기준 등에 의하면 본 호에서 말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란 i)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ii)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iii)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케 하는 표장이 아닌 전체적으로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고, 참고자료에 의할 때 출원인 이외의 제3자가 “Max”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차 관련 제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기타 다수인이 차 관련 제품에 “Max”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 볼 수 없고, 기타 특정인에게 독점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3조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거절이유 2(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 관련

거절이유 2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보정서를 통하여 지정상품 중 “차, 인스턴트 차, 차 혼합제품”을 모두 ‘레몬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으로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 2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와,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 의견서 및 보정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I. 유형 2 : 이의신청서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사는 자사의 등록상표(첨부자료 1)인 “**리더스** LEADER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공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특허사무소 A에 의뢰하였다.

특허사무소 A에서는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공고(첨부자료 2)된 사실을 확인하고 甲사에 보고하였으며, 甲사는 乙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특허사무소 A에 의뢰하였다.

특허사무소 A의 소속 변리사로서 乙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시키기 위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오. 다만, 甲사의 등록상표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수년간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수요자에게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의신청의 이유로 주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甲사는 건강진단 등과 같이 병원에서 행하여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의사가 없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 첨부자료 2 : 출원공고상표공보
-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이의신청 취지 및 이의신청 이유만 작성할 것
5. 참고자료(첨부자료 3) 중 필요한 부분 활용 가능
6.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654321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16년09월10일	리더스 LEADERS
	출원번호	2016-0011111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7년03월1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03월15일	
	지정상품	제44류 : 마사지업, 미용실업, 이용업, 손톱미용업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7.03.15.~2027.03.15.) 금액 000,000원 <div style="text-align: right;">2017년03월15일 납입</div>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3월15일 등록

이하여백

2

출원공고상표공보

<p>(190) 대한민국특허청(KR) 출원공고상표공보</p>	<p>(260) 출원공고번호 40-2017-0011111 (442) 출원공고일자 2017년12월12일</p>
<p>(210) 출원번호 40-2017-0012345 (220) 출원일자 2017년05월20일 (731) 출원인 乙 (740) 대리인 ○○○</p>	
<p>(511) 지정상품(업무)</p> <p>제44류</p> <p>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p> <p>상표견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3

참고자료

(1) 乙의 사용태양



로고를 사용하여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음

(2) '리더스'와 관련된 다수인의 사용 여부

UNIVERA WELLNESS LEADER, 리더M, Fine Fit Leader, 에코리더, Coreana Time Leader 등의 등록상표가 제3류 화장품, 제44류 미용업과 관련하여 모두 다른 권리자 소유로 존재하고 있음

(3) '미'와 관련된 다수인의 사용 여부

미헤어두피, 쉬앤미헤어, 미미용실, 미그리고센스미용실, 미헤어샵, 미헤어플러스, 미헤어코리아와 같은 상표가 미용업에 다수 존재하고 있음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는 무효심판사건을 이의신청사건으로 각색한 문제이다. 상표의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인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양식에 알맞게 적절한 거절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의신청서에서 제시된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여 법적인 항변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의신청의 이유가 제시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의의 및 취지, 적용 요건, 적용 결과 순으로 이의신청 이유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판단의 의의와 외관·칭호·관념의 대비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문자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이의신청 취지】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 상표등록출원 제40-2017-0012345호는 거절결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이 사건 출원상표

상표등록출원 제40-2017-0012345호(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는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건강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7.5.20.자로 출원되어 2017.12.12.자로 출원공고된 상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2017.3.15.자로 등록된 선등록상표(제40-0654321호)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의의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선등록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범위 내에서 상호 저촉되는 상표가 중복하여 등록됨에 따른 일반 수요자의 출처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적용 요건

본 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여야 하고, (ii)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iii)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기 요건에 적용되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존재 여부

선등록상표의 출원일(2016.9.10.)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2017.5.20.)에 앞서고, 2017.3.15.자 등록된 선등록상표가 현재까지 유효하며,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상이하므로 상기 (i)의 요건은 만족합니다.

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판단의 의의 및 기준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칭호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문자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주요부인 ‘리더스미’로 호칭될 것입니다. 또한 선등록상표는 ‘리더스’로 호칭됩니다.

문자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고 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이므로, 어두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며, 비교적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호칭의 첫음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되고 확립된 태도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4음절의 단어로서, ‘리더스미’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3음절의 단어로서 ‘리더스’로 호칭되는 바, 앞의 3음절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호칭이 극히 유사한 상표입니다.

‘리더스미’에서 요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을 대비함으로써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더스’부분의 식별력 존부를 살펴보면, ‘리더스/leaders’는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서 ‘미용실업’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입니다. ‘화장품’ 또는 ‘미용업’과 관련하여 ‘LEADER’ 또는 ‘리더’를 포함한 등록상표들이 존재하지만, 식별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상표가 식별력이 없다 하여 그 복수형이 식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더스/leaders’는 식별력을 갖는 요부로 봄이 타당합니다.

‘미’ 부분의 식별력 존부를 살펴보면, ‘미’는 한자 ‘美’의 한글음역으로서 뷰티업계의 상표로서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검색결과에 따르면, 미용업과 관련하여 ‘미헤어두피’, ‘쉬앤미헤어’, ‘미미용실’, ‘미헤어샵’ 등 다수의 상표가 검색됩니다. 즉, ‘미’는 미용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상실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스미’를 수요자들은 ‘리더스’와 ‘미’로 분리하여 ‘미’는 미용업에 흔히 쓰이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볼 것이므로, ‘리더스’부분을 요부로 인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요부 ‘리더스’의 칭호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3) 관념의 대비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아름다움의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은 ‘지도자들’이라는 선등록상표의 관념에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유사합니다.

(4)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LDSM을 로고화한 도형이 존재하고, 한글 리더스미가 크게, 그 위에 TOTAL BEAUTYCLINIC이 작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국문 리더스와 영문 LEADERS만이 상하로 병기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관의 비유사함이 문자상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한 점을 상쇄하지 못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5)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인의 사용태양의 고려

출원인은 ‘리더스’와 ‘美’가 완전히 분리인식 되도록 상표를 ‘리더스美’와 같이 구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태양을 허용한다면, ‘리더스LEADERS’로 구성된 이의신청인의 선등록상표와 출처의 혼동이 일어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마.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제공자 및 수

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은 선등록상표의 '미용실업, 손톱미용업'과 비교하여 신체를 꾸미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질과 내용이 공통되고, 미용실이라는 공간에서 미용상담과 미용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바 그 제공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용실업, 손톱미용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소결

이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일부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합니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강관리업과 건강진단업은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미용업'등과는 상이한 서비스이긴 하나, 출원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가 거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신청의 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II. 유형 3 : 심판청구서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은 등록상표 의 권리자(첨부자료 1)이다. 甲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소고집' 또는 '암소고집'이 포함된 문구를 간판, 메뉴판, 명함 등에 사용하는 50여 개의 업소를 찾았다(첨부자료 2). 이후 甲은 이 업소들에 자신의 상표권 침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1개월 이내에 간판, 메뉴판, 명함 등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였다.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乙(첨부자료 3)은 2017.9.10. 甲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에 부랴부랴 '암소고집'이라는 상표를 제43류의 '한식점업, 식당체인업'에 대해서 출원하였고, 甲의 상기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을 청구하였다(확인대상표장 :  (메뉴판 및 명함에 사용)).

귀하가 乙의 대리인이라 가정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시오. 단,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으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만 주장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 첨부자료 2 : 甲의 검색 결과
- 첨부자료 3 : 乙의 사용 현황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000567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16년09월10일	
	출원번호	2016-0003456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7년05월20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05월20일	
	지정상품	제43류 :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7.05.20.~2027.05.20.) 금액 000,000원

2017년05월20일 납입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5월20일 등록

이하어백

2

甲의 검색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도검색을 해 보면, 전국적으로 '황소고집'으로 검색되는 곳은 30여개 업소, '암소고집'으로 검색되는 곳은 20여개 업소이며, 이 업소들은 모두 한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암소고집 검색결과입니다.

- | | | |
|-----------------------------------|-----|-----|
| A 암소고집 육류,고기 숯 | 로드뷰 | 길찾기 |
| 042-322-8800 대전 서구 만년로 16 ▼ | | |
| B 갯가네암소고집 육류,고기 | 로드뷰 | 길찾기 |
| 043-262-743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106 ▼ | | |
| C 갯가네암소고집 정육점 | 로드뷰 | 길찾기 |
| 043-291-74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3 ▼ | | |
| D 청원암소고집한우마을 한식 | 로드뷰 | 길찾기 |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75 ▼ | | |
| E 암소고집한우푸줏간 육류,고기 | 로드뷰 | 길찾기 |
| 053-632-5221 대구 달서구 월곡로 184 ▼ | | |

3

乙의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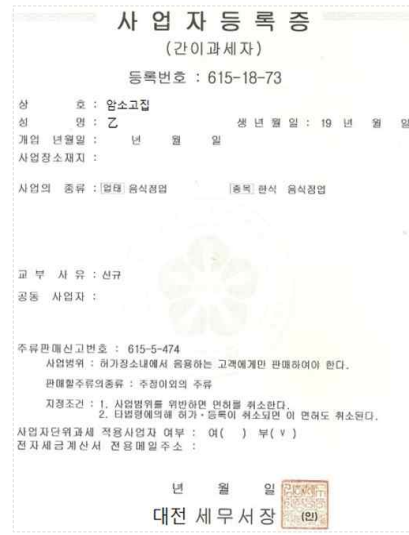
乙은 대전에서 2010.3.27.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1호 점(본점)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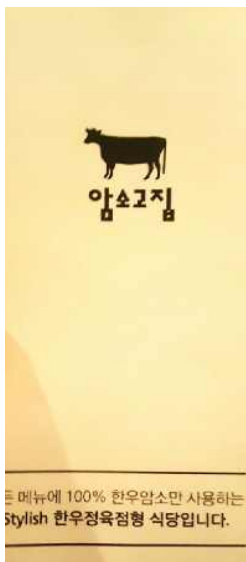
<외부간판>



<입간판>



<사업자등록증>



<메뉴판 표지>



<명함 뒷면>

2. 문제의 접근 요령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에서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등을 문제의 요구에 따라 알맞게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작성하고,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상표의 비유사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가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구법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 자신을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구 판례의 입장은 엄격설이지만(옥류관 사건, 노블레스 사건 등) 2016.9.1. 시행 전부개정 상표법 이후로는 완화된 해석(다농마트 사건)이 나온 바, 개정법 하에서는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거래실정 및 사용태양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며, 판례는 해당 부분이 품질 등을 직감할 수 있으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임을 인정해 왔음에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예시답안

【청구의 취지】

1.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제56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

(생략)

2. 이해관계의 소명

심판청구인은 현재 대전에서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9.1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121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3.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 상표로서 확인대상표장 사용 여부

(1)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구체적 판단

‘암소고집’은 심판청구인의 상호인데(사업자등록증 참조), 거래실정상 한식점업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호를 간판, 메뉴판, 명함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메뉴판 표지나 명함에 표시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식별력이 없는 암소도형이 부가되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상호에 해당하는 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도,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문자부분을 상호로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 중 확인대상표장이 ‘Ochang 다농마트’인 사건에서, ‘Ochang’과 ‘다농마트’는 쉽게 구별되며, ‘Ochang’은 점포 소재지 지명에 불과하므로, ‘다농마트’는 원고 상호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소 그림’ 도형과 ‘암소고집’이라는 문자가 단순하게 결합된 것으로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①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쉽게 구별되며, ② 확인대상표장의 도형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직접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③ ‘암소고집’은 상호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6.9.10.) 전인 2010.3.27.부터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해 왔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① 위에 해당하는지는 표장이 지

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② 표장이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족하고, ③ 표장 전체 뿐만 아니라 그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위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우 전문 정육식당업’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암소고집’이라는 문자부분은 소고기 중에서도 ‘암소’ 고기만을 고집스럽게 취급한다는 의미로 직감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소가 ‘암소고집’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암소고집’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은 실제의 사용태양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메뉴판 표지 하단과 명함에 “모든 메뉴에 100% 한우암소만 사용하는 Stylish 한우정육점형 식당입니다”라는 문장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암소고집’ 부분은 위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고집’ 부분이 공통되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장을 날인한 것 같은 그림’이 필기체로 된 ‘황소고집’과 횡서표기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소 그림’ 도형이 특정한 글씨체로 된 ‘암소고집’과 상하2단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양자는 외관이 현저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큰황소고집’이라고 6음절로 호칭될 것임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암소고집’이라고 4음절로 호칭되므로, 호칭도 상이합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통큰’은 ‘통이 크다. 즉 후하고 도량이 넓다’는 뜻이고, ‘황소고집’은 ‘쇠고집, 몹시 센 고집’이라는 뜻이지만, 확인대상표장에서 ‘암소고집’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100% 암소고기’만을 취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관념이 상이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합니다.

특히 '한우 전문 정육식당업'과 같은 요식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매장 내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비스 제공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①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것일 뿐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이자(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 동시에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상이하여 상품 제공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입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오니, 청구의 취지와 같이 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V. 유형 4 : 소장의 작성 문제

1. 문제

甲의 등록상표(첨부자료 1)에 대하여 乙이 2017.6.10.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甲의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심결(첨부자료 2)을 하였다.

귀하가 甲의 대리인이라 가정하고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시오. 단, 심결문을 받은 이후에 甲이 조사한 사항(첨부자료 3) 중에서 甲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반영하시오. (2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 첨부자료 2 : 심결문
-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청구원인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생략할 것
5. 서술어는 관행상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012345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09년04월13일	MERIUMS 메리움스
	출원번호	2009-0001111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0년07월19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0년07월19일	
	지정상품	제3류 : 립스틱, 마스크라, 콜드크림, 향수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0.07.19.~2020.07.19.) 금액 000,000원 2010년07월19일 납입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0년07월19일 등록

이하어백

특 허 심 판 원

심 결

심판번호 2017당1978

심 결 일 2017.12.10.

주 문

1. 상표등록 제12345호의 등록을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하 심결이유의 요지)

(1)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MERIUMS”를 표시한 향수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MERIUMS”를 향수에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심결에서 인정한 사실

- 피청구인은 국내에서 핸드백 상표로 널리 알려진 “MERIUMS”의 상표권자로서, 전

국 백화점 내 50여 곳의 대리점에서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7.5. 향수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향수 500개(규격 30ml)를 1개당 10,000원에 납품받았고, 그 제품과 포장지에는 “MERIUMS”를 표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7.26. 백화점에 있는 대리점 4곳에 각 20개, 15개, 30개, 15개의 향수를 1개당 10,000원 또는 1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피청구인과 대리점은 주로 위 향수를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나) 심결의 판단

피청구인의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MERIUMS”를 향수에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 판 장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

3

참고자료

심결문을 받은 이후에 甲이 조사한 사항

(1)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의 규격과 포장형태를 조사하여 자신의 향수와 비교해 보았다.

(2) 시중에서 핸드백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향수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2. 문제의 접근 요령

이 문제의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서는 취소대상 심결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청구원인에서는 상표등록취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법리적인 요소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과 관련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형 문제라는 특징에 기하여 작성양식과 관련한 주의도 필요한데, 문제의 甲을 원고로, 취소대상 심결을 '이 사건 심결'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甲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거나 취소대상 심결을 '원심' 또는 '원심결'로 기재할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다.

3. 예시답안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7.12.10.자 2017당19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생략)

2. 심결 이유의 요지

(생략)

3. 심결 취소사유

가.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3년 “CONTINENTAL 콘티넨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영문과 한글음역을 결합하여 상표로 등록한 뒤 그 영문과 한글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하여도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리움스”는 영문 “MERIUMS”의 한글음역임을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메리움스”가 함께 표시되거나 생략됨에 따라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메리움스”를 생략하고 “MERIUMS”만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관념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사용상표 “MERIUMS”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MERIUMS”를 향수에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7.5. 향수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향수 500개(규격 30ml)를 1개당 10,000원에 납품 받았고, 그 제품과 포장지에는 “MERIUMS”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7.26. 백화점에 있는 대리점 4곳에 각 20개, 15개, 30개, 15개의 향수를 1개당 10,000원 또는 1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원고와 대리점들은 주로 위 향수를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의 규격을 보면 원고의 향수와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그 포장의 질과 형태를 보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의 향수를 접할 경우 그 규격과 포장으로 인하여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 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판매용 제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처럼 핸드백을 판매하는 여러 곳에서 핸드백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향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로부터 향수를 제공받을 경우 단순한 마케팅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핸드백 업체들처럼 핸드백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들이 위 향수를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원가의 2배에 판매한 점, 원고가 대리점들에게도 원가 또는 제조원가 이상을 받고 팔았다는 점, 원고의 향수의 규격과 포장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와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타 핸드백 업체들이 향수도 판매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향수를 접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의 향수를 핸드백 마케팅 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판매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MERIUMS”를 향수에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향수 및 향수의 포장지에 표시한 “MERIUMS”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향수 또는 향수의 포장에 표시하였고, 그 향수를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대리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향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부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답안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채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항이며, 다만 예시답안이 절대적인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출제 및 채점기준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자 간의 논의를 통한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2019년부터 실시될 변리사 시험 제2차 실무형 문제의 예시문제 및 답안, 그리고 시험운영방안 및 제언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분야별 출제의 곤란성, 객관성 있는 평가의 곤란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나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국·영문명세서를 잘 쓸 수 있는 변리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실무에서 주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할 때, 최소한 2차 시험 논술형 문제에서 실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명세서 작성문제 등을 출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실무형 문제를 도입할 때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크게는 실무형 문제를 통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실무형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례해석능력, 논리력, 법적용 능력, 실무적용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출제의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는 시험과목의 범위, 출제형식, 해답형식, 시험시간·일정, 문제 수, 융합문제의 형태, 채점방법, 합부판정방법, 기준, 기타 시험의 구체적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2019년 제2차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1문제 출제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행 2차 시험의 4개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바, 그 중의 1문제를 실무형 문제로 변경하여 출제하고자 하며, 대신 실무형 문제의 출제에 따라 시험의 시간 역시 현행 시험별 120분에서 140분으로 소폭 연장하도록 한다. 실무형 시험의 배점은 현행과 동일하게 20점 내지 30점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실무형 문제의 유형으로는 특허법과 상표법 각각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예시문제와 접근요령, 예시답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1개의 유형 안에 다양한 소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험생에게 사전 공지될 필요가 있다. 향후 다양한 문제유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시험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제의 유형 및 문항 수, 배점과 같은 세부 출제방침, 시험 실시일정 등과 같은 운영방침, 상세 채점기준 등을 논의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침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은 실무형 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형 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이 시간의 부족이나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능한 변리사의 배출의 측면에서 실무형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점에 대한 단문 문제의 출제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실무형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상표와 디자인을 제외한 특허출원에 편중되어 특허와 관련한 실무형 문제를 세분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²⁹⁾ 현재 상표 실무형 문제의 출제 방식 및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의 변리사 시험의 경우,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실무형 문제에 있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국외에서의 변리사 실무형 문제의 출제와 수평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무형 문제의 운영 및 시험 전반적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계, 실무, 시험의 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29) 국외 실무형 문제 출제현황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리사 시험제도 실무형 문제 출제현황]

실무형 문제 출제 국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국	○	○	
중국	○		
EQE	○		
한국(개선안)	○	○	

[참고문헌]

전광출, 변리사의 자주성 측면에서 본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지식과 권리」 제16호, 대한변리사회, 2013

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3

특허청, 「출원서식 표준사례집」, 특허청, 2014

특허청, 「특허청, 실무에 강한 변리사를 선발한다」, 2014. 6. 30. 보도자료

